

인천지방법원 2021. 8. 18 선고 2021가단23259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인천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배

피 고 A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8. 18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B와 피고 사이에 2020. 11. 17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B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. 11. 17. 접수 제4971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 강인혜

별지